

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
임시회 폐회중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0. 9. 4.

서울특별시의회의원
김 소 영

-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!
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민생당 김소영 의원입니다.

-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
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-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의 확산으로 인해
확진자 및 해외 입국자 등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
시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
또한,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도 자가격리를 하게 됨에 따라
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,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늘고 있습니다.

- 특히, 장애인은 신체적·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
자가격리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며,
건강유지를 위하여 감염병에 관한 정보 등을
제대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.

- 이에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및
장애인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정보제공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
장애인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.

-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

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및
장애인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정보제공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,

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발생 시,

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이 개선되고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

본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

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